

**[붙임]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33호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제약기업의 의약품 개발 관련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2026년 의약품 특허 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개요**

**목적:**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조기에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전략 수립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추진체계**

- (사업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총괄과)
- (사업 주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식재산보호문화교육실)

**지원 대상**

-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최근 2년 평균 연매출액 1.8천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중 ▲(신규)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계속) 추가적인 특허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총 9개 이내 제약기업
- (지원 금액) 기업별 최대 30백만원(컨설팅 비용의 70%)
- (지원 조건) 최종 평가 결과 “성공” 과제로 평가된 기업
- (지원 기간) '26. 7월 ~ 10월, 약 4개월

\* 지원 금액은 신청 과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되며,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지원기업 수 변경 가능

### < '26년 주요 변동 사항 >

- (▲ 지원 대상 확대) 7개 → 9개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5천억원 미만 → 1.8천억원 이하
- (▲ 과제별 사업비 증액) 최대 30백만원 → 최대 42백만원(정부지원금 70%, 기업부담금 30%)
- (▲ 컨설팅 범위 확대) '특허 청구항 심층분석' 추가

#### □ 지원 내용

-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자료 수집,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
- '16~'25년도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과제 중 의약품 개발·생산을 위해 추가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 <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내용 >

- **【기존】** 등재 의약품 특허 및 기타 특허(조성물, 결정형 등)에 포함된 상세 기술 및 특허 명세서 분석
- **【기존】** 국내외 출원 특허 기술 조사, 특허 등록 및 분쟁 여부 파악 등 특허 도전 의약품 관련 동향을 분석하여 R&D 방향 제시
- **【기존】** 특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단계별 세부 수행 전략 수립 및 의약품 개발 지원
- **【기존】**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전략 수립 및 특허심판 청구를 위한 법리적 대응 논리 지원
- **【기존】** 특허침해 판단(FTO)을 통한 회피가능성 검토, 무효 논리 개발 및 Claim Chart 작성
- **【신규】** 대상 특허 청구항별 구성요소 분석을 통한 권리범위 확정 및 권리 행사 유효성 심층분석

## 2.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지

- (모집 기간) 2026.5.18.(월)~6.7.(일) 23:59까지
- (결과 통지) 2026. 6월 중

####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medi-pat@koipa.re.kr) 제출
- \*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한눈에 보는 컨설팅 가이드북 참고

### < 지원기업 작성 및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첨부파일 서류명
신청서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1	재무 현황 확인서
첨부 2	기업·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첨부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첨부 4	컨설팅 기관의 수행계획서(컨설팅 기관 지정 시)
증빙자료	재무현황 증빙자료(2024년~2025년 재무제표)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국세청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이메일 제출시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서류는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10MB 이하)하여 제출(파일명 : 지원기업명.ZIP)
- ※ 접수 마감시간은 도착시간 기준이며, 이메일 발송을 6.7.(일) 23:59에 하였다 하더라도 보호원에서 확인되는 도착시간이 6.8.(월) 00:00일 경우 접수처리 불가
-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필수서류가 누락 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될 수 있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컨설팅 기관 지정) 지원기업이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 가능

- \* **【컨설팅 기관 지정 시】** 컨설팅 기관의 과업수행계획서를 함께 제출
- 【미지정시】** 본 사업 컨설팅 등록 기관 목록 제공 가능

<b>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미등록된 기관은 컨설팅 수행 불가</li> <li>• 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본 사업 컨설팅 등록 기관 목록 제공 가능 (<a href="mailto:medi-pat@koipa.re.kr">medi-pat@koipa.re.kr</a>로 요청)</li> <li>•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 필요</li> <li>•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li> </ul>
-------------	--

### 3. 지원기업 및 컨설팅 기관 선정

□ 선정 절차



□ 선정 기준

- (지원기업) 발표심사, 지원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평가점수 60점 이상(총점 100점 기준)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 제약기업의 과제 책임자가 컨설팅 신청 과제에 대해 설명
  - \*\* 동점 발생 시, 평가항목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기업을 우선하여 선정
- (컨설팅 기관) 서면심사, 컨설팅 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추후 집중관리 대상 분류 기준으로 활용

<b>수행기관 분류 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 : 수행적합', '60점 미만 : 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li> <li>•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과제는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 진행 예정</li> </ul>
-----------------------	--

**<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100점)
컨설팅 과제의 적절성 (30)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10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와 수준의 합리성	10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독창성과 차별성	10
컨설팅 지원의 타당성 (50)	컨설팅 지원 필요성	20
	컨설팅 지원사업 취지와와의 부합성	10
	제품화 등 실현 가능성 및 컨설팅 결과 활용 가능성	10
	컨설팅 내용 대비 컨설팅 예상 비용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20)	컨설팅 결과 활용 계획 등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컨설팅 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사회·경제적 효용성	10

**< 컨설팅 기관 선정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100점)
사업이해도	수행기관의 지원사업·유형에 대한 이해도	30
수행계획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수행계획 적절성 및 구체성	40
수행계획 실현 가능성	수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30

□ 결과 통지: 컨설팅 사업 이메일 계정을 통해 선정 결과 개별 통지

## □ 협약 체결

- (기업부담금)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얻고 기업부담금(현금) 납부기간 연장 가능

- (협약체결) 지원기업과 컨설팅 기관, 보호원 간 3자 협약을 체결하여 과업 수행 및 책임 범위 등 명시
- (협약방식) 지원기업과 컨설팅 기관, 보호원 간 협약서 서면 날인

## 4.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보호문화교육실: 02-6196-2071, 2073

【별첨1】 「2026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기업 신청서

【별첨2】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한눈에 보는 컨설팅 가이드북